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33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 한준호 · 이재관 · 박상혁

차지호 · 김원이 · 신영대

정태호 · 김태선 · 김용만

전현희 · 장경태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할 구체적인 회의의 종류 및 회의록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 닐 경우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회의록 등을 작성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5항).
- 나.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 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한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 라.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모든 원격영상회의가 자동 녹화 시스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 17조의2제6항).

법률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주요 회의의 기록물 생산)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기록을 생산하는 때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의 회의
 -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 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 7.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 하는 회의
- 9.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지시 하달 또는 논의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 10. 정책 자문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의 정책 결정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의
- 11. 그 밖에 회의록 등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기록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 조사에 관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

-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⑤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작성한다.
- ⑥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여하는 모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녹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의 녹화 기록은 녹음기록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삭 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 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주요 회의의 기록물 생산)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 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 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기록을 생산하는 때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 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 자가 참석하는 회의
-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의 회의
-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 7.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 9.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지시 하달 또는 논의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 10. 정책 자문을 목적으로 차관 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의 정

<u>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u> 있는 회의

- 11. 그 밖에 회의록 등의 작성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

 요 회의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 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기록 생산 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 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 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나 국정조사에 관한 속기록 또 는 녹음기록의 제출에 관하여 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 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작성한다.

⑥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여하는 모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녹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의 녹화 기록은 녹음기록으로간주한다.